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4. 1. 14(화) 15: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보고해 주세요.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17명이 신청 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4년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해 제46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 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 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2014-1-1)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아래 후보자를 위촉하는데 동의한다. 위원장으로는 김대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신규 위촉하며, 위원으로는 임지봉, 이제호, 김지현, 라현주, 박은희 등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배진아 공주대학교 교수를 신규 위촉하는데 동의한다. 제안이유는 제5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2014년 1월 2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6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원 위촉과 관련된 법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에 대해서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법률, 행정, 경영, 회계,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그 밖에 방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위원 위촉 동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 (2014-1-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KT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첫째, 피신청인은 2013년 4월 23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최초 안내한 대로 할인요금(월 10,000원)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월 12,500원)을 청구하라.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년 5월부터 재정결정일 현재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9,570원 및 반환할 때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라. 셋째,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입니다. 다음으로 본 재정 건의 제안이유는 신청인 유OO 씨께서 피신청인 KT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 건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재정 신청인이 제시한 재정신청 취지로는 첫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정한 요금 월 12,500원만 청구해야 하고,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및 그 요금을 징수한 때로부터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셋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본 재정 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파악한 기초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가입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신청인은 2013년 4월 23일 KTOO지사에서 월 기본료 22,500원(가입비 24,000원과 유심비 11,000원은 별도)에 '3G data 1GByte'를 제공받을 수 있는 'Olleh데이터콤보(1G)' 상품에 가입하여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인의 서비스 가입비용 관련해서 확인한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이 데이터 전용 단말기로 가입 가능한 서비스의 이용요금에 대해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및 OO지사에 문의 결과, 월 기본료가 22,500원인데 10,000원 할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24일 피신청인의 OO지사에서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 입력 작업 중 요금할인이 불가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인이 요금할인을 주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상요금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통시켰고, 신청인은 정상요금을 2013년 5월 이후 매달 신청인에게 자동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갈리고 있는데 먼저 신청인은 2003년 4월 중순, OO지사로부터 월 기본요금 10,000원 할인뿐만 아니라 가입비 및 유심비도 면제받았음을 안내받았다고 하면서 OO지사 직원이 건네 준 유심칩을 신청인의 단말기에 끼움으로써 사전에 안내한 대로 할인요금으로의 이용계약이 성립된 것이며, 그 이후 개통을 위한 전산입력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용계약의 성립과 관계가 없으므로 당초 안내한대로 요금할인 등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한편 피신청인은 이용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안내를 하였고, 가입비 및 유심비 면제는 잘못된 안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개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완료하여야 성립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계약 체결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고지의무와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 근

거하여 이루어지는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완성되므로, 사업자가 승낙의사를 확인하는 전산입력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건 계약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한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정상적인 가입 과정을 거치지 않아 적법·유효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피신청인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이용계약 성립’에 관한 당사자간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할인요금을, 피신청인은 정상요금을 주장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고객센터 및 OO지사가 잘못된 안내를 하였고,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상요금을 적용한 일방적인 서비스 개통 등 피신청인의 매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의 정정안내 이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상요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기간이 24개월임을 고려하여 본 건 이용계약 체결일인 2013년 4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최초 안내한 할인요금 월 10,000원을 적용한 이용요금인 월 12,500원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피신청인은 본 건 이용계약 체결일인 2013년 4월 24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24개월 동안 최초 안내한 할인요금을 적용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초 청구한 2013년 5월부터 재정결정일 현재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2014년 1월 현재 79,570원 및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주장은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본 건 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상 재정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충실히 받은 것이지요?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방통위가 가용할 수 있는 변호사가 몇 사람쯤 됩니까?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저희가 법률자문인력이 한 50여명 가까이 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불과 몇 만원짜리 사안이지만 5,000만 휴대폰 가입자가 의제된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가려준 것은 고맙고, 보고받을 때부터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 과장, 오늘 아침에 지난번 과징금 절차 2억 3,000만원을 패소했다는 기사 봤습니까?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보았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을 저 자신도 참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2,600만명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으로 팝업창으로 미끼상품으로 띄워서 그것을 얻어서 1,300만 건을 팔아먹어서, 제가 OOO커뮤니케이션즈라고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었다고 해서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는데 지금 기조실에서 온 김과장! 이것이 1심에서 졌을 때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불법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그쪽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불법과 과징금을 부과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한 것입니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면 과징금을 당신들한테 어떻게 산정했나 하는 부분들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서, 그 당시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더라도 항소에 실익이 없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질 나쁜 도둑을 잡아놓고 가지고 있는 수갑이 허술하니까 도망을 간 셈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상임위원도 이것을 쳐다보니까 그렇게 허술하게 보았나 싶은데,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적법절차를 충실하게 점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과장 소관은 아닐 수 있고 기조실에서 공유를 해야겠지만 변호사라든가 지금 말한 대로 50명씩이나 가용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원회 의결하기 전에 한번씩 스크린 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엄청난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해서 방통위가 부끄럽고 또 실무과도 부끄럽고, 또 나아가 의결한 상임위원들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김 과장이 기조실장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십시오.

○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행정절차법 위반이어서... 기조실에서 잘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KT가 KT에 있는 안내센터에서 안내를 잘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맞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안내를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안내를 과잉하게 한 것 아닙니까?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안내를 담당자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해서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이 가만히 보면 안내를 과잉되게 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일환으로 안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당할 수도 있다, 당하고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것을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고 말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런 안내를 일부러 이렇게 하는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 건은 이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서 바로 원인이 된 것이 잘못 안내했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 안내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알겠습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이 재정이라는 사례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 이런 사례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최근 2~3년 내에는 처음입니다.

○ **김대회 상임위원**

- 그래서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반가운 것이 국민들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차제에 좀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 의견에 동의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재정까지 왔겠냐는 부분에 있어서 KT뿐만 아니고 통신3사, 그다음에 알뜰폰까지 이런 부분들이 비밀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의도적 거짓말, 과잉 마케팅의 결과물로 우리는 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 말씀하셨던 재정제도를 좀 더 간소하게 하고 이런 제도, 그다음에 자기가 직접 쉽게 써서 우리에게 재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기자들께 협조 요청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고 이래야 또 과잉 마케팅 자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유OO 씨가 현직 공무원이지요?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찾았을 것 아닙니까? 억울하니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고충들을 충분히 헤아려서 쉽게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알리자는 부분에 동의하고, 사무국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금 이 문제는 개인의 요금할인 문제인데 액수로 따지면 월 10,000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정 신청해서 8개월 동안이니까 80,000원 찾자고 꼭 이렇게 재정 신청한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재정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면밀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80,000원을 보상해 줘라,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나를 생각하면 엄청난 정신적 피해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피해는 근거가 없으니까 기각한다고 해서 제가 섭섭한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그래도 알고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같은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상하는 것도 단순하게 못 받은 것만 보상 받아라, 이것 가지고는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몇 배로 더 과징 해서 한다면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정신적 피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릴 수 있게 한다면가,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분한테는 안 됐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주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도개선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현재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

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4-1-3)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유예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원활한 허가심사를 위해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허가절차가 허가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허가심사, 위원회 의결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가절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신청서 접수입니다. 종편PP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설립예정법인 포함, 이하 미디어렙 신청법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습니다. 참고표에 보시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종편PP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편PP 승인일로부터 3년 후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종편PP는 각 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편PP 방송광고판매 의무위탁 적용일은 TV조선과 JTBC의 경우 '14년 4월 1일, 채널A의 경우 '14년 4월 22일, MBN의 경우 '14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토록 하고, 심사위원은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10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 심사입니다.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사위원회는 미디어렙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동법 시행령·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이하 허가고시) 또는 허가심사 계획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사관련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요건과 관련하여 미디어렙법 제12조에 따른 미디어렙 신청법인의 대표자 결격여부 및 동법 제13조에 따른 소유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미디어렙 제6조 및 「허가고시」에 따른 심사항목에 대해 계량·비계량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평가는 전체 100점 만점 중에 10점, 그리고 비계량평가는 90점으로 되어 있고, 심사항목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사항은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100점 만점에 30점으로 되

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이 30점, 세 번째 재정능력 및 재정 건전성이 20점, 네 번째 방송 및 광고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이 10점, 다섯 번째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은 허가고시 별표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의 생각으로는 종편의 경우에는 신규 법인인 점을 감안했을 때 경영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재정능력 등에 대한 배점이 적절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심사를 마치게 되면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60점 이상 그리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 시에는 미디어랩 사업자로서 적격하다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의 적격 판정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통보하게 되고, 이 경우에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오늘 기본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1월 20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 허가신청 공고를 하고, 사업계획서 접수는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허가심사 및 방통위 의결은 2014년 2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초에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일정 이후에 접수되는 종편PP 미디어랩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별도 일정을 정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신규허가 기본계획(안)을 <붙임>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이 지난번 다른 지상파 랩들을 준용한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허가 고시에 이미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종편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하는 사업자를 나누어서 심사사항, 세부 심사기준, 배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재정능력과 건전성이 20점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렇게 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지금 이것이 종편의 광고 부문이 별도의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주장할 소지가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10년도 종편PP를 승인할 때에도 그 당시 재정능력에 대한 배점이 100점 만점으로 보면 2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상파 미디어렐 허가했을 때 재정능력에 대한 배점이 1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0점이라는 점수가 그렇게 낮은 점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조직과 인력운영 등의 기존 인프라에 대한 적정성이 30%에 가까운 30점이 되고, 재정능력이 5분의 1밖에 안 되는 20점이라는 것은 지금 종편의 일반적인 행태로 볼 때 지적받을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허가 고시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고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일단 희망사업자들에 대한 전형 요건으로 이미 배부가 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예, 알았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동일한 문제제기였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미디어크리에이트 때보다 8점 정도 더 재정능력 및 재정 건전성을 올렸고, 그다음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에서 또 짚어볼 대목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 설명은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한 부분들, 즉 미디어렐이 기존의 1공영 1민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새롭게 다시 미디어렐을 종편에 부여하는데 종편은 왜 1사 1렐이냐, 그러면 이것도 전형적인 특혜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편 허가할 때 최소 자본금을 3,000억원 이하의 가이드라인을 그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이드라인을 그었던 것처럼 최소한 종편4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단일 미디어렐으로 못 간다를 우리가 그대로 허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미디어렐의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이 원래 미디어렐의 정신이라면 재정능력 및 재정 건전성을 대폭 확장함으로써 종편4사가 1렐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측면들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론하면 안 되는가,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재정능력과 관련된 대폭적인 확대 강화와 그다음에 최소한의 자본금 가이드라인이 종편 허가 때처럼 재정돈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디어렐 체제로 개편하는 법 개정이 있을 당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던 입장에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디어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지상파만 하면 되지 뭐 종편까지 하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 양 위원 말씀하신 것을 그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1사 1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 묶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다 위탁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다 협의를 했는데 사실 지상파방송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이렇게 미디어렐을 하는 데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인 의무도 조금 있으니까 그렇다면 미디어렐로 하는 것까지는 양해를 하되 그것을 각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4개를 모아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그런 규제를 하지 말자, 그때 법을 만들 때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우리가 그 대목에 관해서까지 가이드라인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나 그 당시 분위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홍 위원님께서 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러한 그 당시 상황이 반영되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부칙 제4조에 보면 종편PP가 각사별로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의 허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정능력 및 재정 건전성 <3-1>을 보면 '자본금의 규모 및 조달방법 등이 적정할 것'이라고 하면 자본금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점수가 높아집니까? '이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라고 대답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본적인 심사와 허가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의 규모가 가장 높은 데부터 점수가 차등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무처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미디어렐이라는 부분들은 광고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광고를 대행하는데 사 주고 팔아주는 부분을 할 때면 이것이 먹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업이 중간 브릿지 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 상황에서도 자본금의 규모가 충분히 있고 배상 가능한, 언제든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규모여야 미디어렐의 건설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 획득 시 적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59점 이하는 과락인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과락일 때도 허가해 주지 않고, 그다음에 총점 69점 이하일 때도 허가해 주지 않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과락 항목이 5개, 그다음에 총점 항목으로 해서 6개 중의 하나에 걸리면 허가가 안 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종편은 미디어랩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일정한 저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업자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부적격 처리가 되어서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책은 무엇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하기 싫은 것 떨어지면 여전히 매체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광고영업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때 사무처는 어떤 입장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먼저 자본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각사별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적절한 자본금 규모는 각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답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만약에 종편 미디어랩이 적격심사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법에 분명히 3년 유예기간을 두었고, 3년이 지나면 미디어랩을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 만약에 어느 특정 미디어랩이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미디어랩을 통해서 광고판매를 하거나...

○ 양문석 상임위원

- 위탁...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지요. 그 경우나 아니면 다시 보완해서 방통위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위탁의 방식과 재심사의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위탁계약까지의 기간, 그다음에 재심사와 최종 허가의 기간까지는 그것이 1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기간은 명확하게 직접영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직접영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이고, 아까 정치적이 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원회는 사무적으로 처리할 문제이고, 걱정하는 부분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혹시 파산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불필요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중간 과정의 걱정도 사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됐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시에는 과락이 되면 다 불합격이 되는 것인지, 제가 그 규정을 보지 못했는데, 다른 경우 조건부 허가가 되든 또는 승인 취소가 되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무조건 탈락이 되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미디어랩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사항별로 60점이 안 되고 총점 기준에서 70점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방통위가 먼저 기본계획을 의결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자가 신청하는 구조지만 지금 미디어랩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미디어랩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방통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방통위에 신청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탈락되는 기간에는 어떻게 보면 영업정지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다른 미디어랩에 위탁해서 할 수 있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문제점들은 다 지적이 됐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2013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상 목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건전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시상 분야는 방송대상의 시상부문은 상의 권위와 일관성을 고려해서 기존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프로그램 분야 우수상의 경우 방송콘텐츠가 한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에 수여하는 ‘한류우수상’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처음 방영된 프로그램 중 2013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특별상의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작가의 지속적 발굴을 위해 ‘방송작가상’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시상 내역입니다. 프로그램 분야는 대통령상인 대상 1편을 선정하고, 방송통신위원장상인 우수상은 신설되는 한류우수상을 비롯해 6개 부문 총 12편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상은 6개 부문별로 각 2편씩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응모작품수와 수준을 감안해 총량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상 분야는 신설되는 방송작가상과 공로상, 바른 방송언어상, 방송기술상, 제작역량우수상 등 총 5개 분야 각 1편씩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 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로 예심 심사위원회, 본심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상하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서 활동한 심사위원을 예심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이 <도표>에 나와 있는데 예심 심사위원회, 본심 심사위원회에 대한 구성, 심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시사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직무는 우수상의 경우 예심 심사위원회가 시상 편수의 5배수를 본심에 추천하고, 본심 심사위원회는 대상을 포함한 각 부문별 수상작품을 최종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상의 경우에는 본심 심사위원회가 각 부문별 수상대상을 바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특별상 분야 중 '제작역량우수상'은 위원회가 별도로 선정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우수 사업자를 수상 대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기준입니다. 우수상의 경우 공공·공익성 30점과 제작 완성도 30점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류상의 경우 해외수출 실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성, 한류기여도 점수배점을 50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상의 경우 전문성을 공통기준으로 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2014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관련된 공고를 1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응모작품 접수, 예심·본심 심사위원회 구성, 예심·본심 실시, 그리고 수상작 선정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상식은 4월 28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의견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제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KBS 수신료와 관련된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분,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공청회를 거쳐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제 위원장

- 이상으로 2014년도 첫 회의인 제1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폐회】